

1. 개정 이유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수주를 버림으로 계산하고 반대표는 단수주를 올림으로 계산하도록 그 행사 방법을 명시

나.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소수 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수 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다.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 (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

-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제62조제2항제2호)에 맞게 자구 수정

라.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776호, '24.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 (안 제9조제2항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

바.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2025.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 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부분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 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른 소수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5. 상법 제360조의3제3항제4호, 상법 제360조의16제1항제4호 및 상법 제523조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받는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합의 의결권 행사 방법) 조합의 대표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조에서 “단수주”라 한다)는 찬성하는 경우에는 단수주를 버림으로 계산하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단수주를 올림으로 계산한다.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된”을 각각 “사용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아주조합 설립 통지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조합	명칭	조합원 수		
	창립총회일	위탁계약 체결일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부서/직책		
회사	상호	업종		
	대표자	납입자본금(원)		
	근로자 수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상장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조합의 규약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3.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확인사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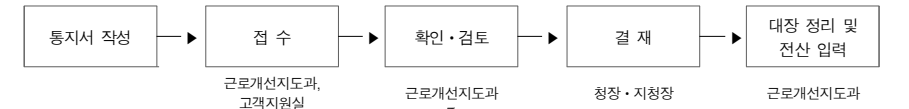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위탁계약 체결일 난은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 체결일을 적습니다.
- 주사무소 소재지 난에 우리사주조합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기금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직책	
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 위원	근로자측	성명	생년월일	직 책
	사용자측	성명	생년월일	직 책
분사무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5항·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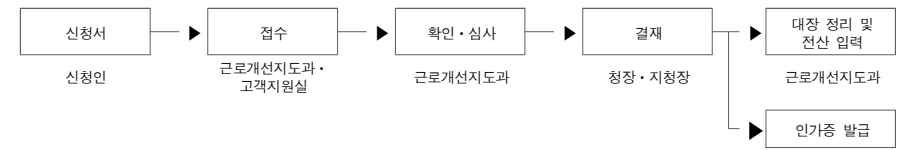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외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작성방법

- 대표자란에는 기금법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직책란, 근로자측란, 사용자측란의 직책란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직책을 적습니다.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년도분)

※ 3쪽 및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1쪽)

기금법인	① 기금법인명		② 인가번호	
	③ 설립등기일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체	⑦ 대표자		⑧ 업종	
	⑨ 소속근로자 수(명)		⑩ 협력업체근로자 수(명)	
	⑪ 납입자본금(천원)			
기본재산 현황 (천원)	⑫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			
	해당 회계연도 변동 금액	증가	⑬ 사업주 출연	⑭ 수익금·이월금 전입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	⑯ 기금법인 합병
		감소	⑰ 기본재산 사용	⑱ 기금법인 분할 등
		⑲ 소계		
⑳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				
기금 운용 및 관리 (천원)	운용방법	⑳ 금융회사 예입·예탁	㉑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㉒ 유가증권 매입	㉓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㉕ 기타	
	㉖ 근로자 대부			
	㉗ 합계			
기금사업 재원 (천원)	㉘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 수익금			
	㉙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90 범위			
	㉚ 기본재산 총액의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			
	㉛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			
	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 및 그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			
	㉝ 이월금 등			
㉞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㉞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9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㉟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㉟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			㊱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	
	㊱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㊱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 00분의 2 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㊱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 0분의 25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㊱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	
	㊱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㊱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㊱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			㊱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	
	㊱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㊱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㊱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㊱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사업 실적 (천원, 명)	구분	구분	계		목적사업		대부사업		
			복지 사업비	금액	수혜자 수	금액	수혜자 수	금액	수혜자 수
				㊱ 주택구입·임차자금					
				㊱ 우리사주 구입자금					
				㊱ 생활안정자금					
				㊱ 장학금					
				㊱ 재난구호금					
				㊱ 체육·문화활동 지원					
				㊱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지원					
				㊱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㊱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㊱ 그 밖의 복지비					
				㊱ 소계					
				㊱ 기금 운영비					
				㊱ 잔액					
㊱ 합계									

선택적 복지비 (천원, 명)	㊱ 금액	㊱ 수혜자 수
--------------------	------	---------

부동산 현황 (천원)	㊱ 명칭	㊱ 금액	㊱ 취득일
-------------------	------	------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금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년도분)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속하는 연도를 적고, ⑥ 회계연도란에는 기금법인 회계연도의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2. ⑧ 업종란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 소속근로자 수란에는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를 적고, ⑩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 ⑪ 납입자본금란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조합·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5. ⑫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란에는 기금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적습니다.
6. 해당 회계연도 변동금액란(⑬ ~ ⑮)은 해당 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
7. ⑬ 사업주 출연란에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8. ⑭ 수익금·이월금 전입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에서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 결산 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결정한 금액이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란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0. ⑯ 기금법인 합병란에는 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 증가액을 적습니다.
11. ⑰ 기본재산 사용란에는 ⑳부터 ㉓까지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기금법인 분할 등란에는 기금법인 분할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 감소액을 적습니다.
13. ⑯ 소계란에는 사업주 출연(⑬), 수익금·이월금 전입(⑭), 사업주 외의 자 출연(⑮), 기금법인 합병(⑯)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 사용(⑰), 기금법인 분할 등(⑱)을 더한 금액을 뺀[(⑬+⑭+⑮+⑯)-(⑰+⑱)]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란 에는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㉔)과 소계(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기금 운용 및 관리란(㉕ ~ ㉗)에는 ㉕의 기본재산이 운용 또는 대부된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16. ㉗ 근로자 대부란에는 기본재산에서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날 현재 근로자에게 주채구입·임차자금, 우리사주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대부되어 있는 전체 금액(누계 금액)을 적습니다.
※ (예시)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30명에게 1억원이 대부금으로 쓰이고 있고, 해당 연도에 1천만원을 1명에게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억1천만원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수해자 수는 32명으로 적습니다.
17. 기금사업 재원란(㉘~㉚)에는 기금사업(㉗) 근로자 대부는 제외함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재원을 적습니다. ㉗과 ㉚의 합계액은 ㉗과 일치해야 합니다.
18. ㉘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 수익금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금의 수익금으로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㉙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90 범위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80(「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만 해당함) 또는 100분의 90(「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의 경우만 해당함)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㉙ 기본재산 총액의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란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장)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어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㉚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의결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운영상황 보고 시 ㉚ 이월금 등란에 적지 않고 ㉚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란에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22. ㉚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 및 그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㉚ 이월금 등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현재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24.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란(㉛ ~ ㉝)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90 범위 사용 현황란(㉞ ~ ㉠)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90 범위에서 기금사업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5. ㉞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란에는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의 합계(㉛+㉞)를 적습니다.
26. ㉟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본문)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27. ㊱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㊱ 중에서 협력업체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28. ㊲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란에는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의 합계(㉛+㉞)를 적습니다.
29. ㊲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0. ㊳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㊳ 중에서 협력업체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1. ㊴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2. ㊵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㊵ 중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3. ㊶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4. ㊷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㊷ 금액에서 ㊸ 금액을 뺀 금액)을 소속 근로자 수(㉑)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소속근로자: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35. ㊸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㊸)을 협력업체근로자 수(㉒)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6. ㊹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7. ㊺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㊺ 중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8. ㊻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25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9. ㊼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㊼ 금액에서 ㊽ 금액을 뺀 금액)을 소속근로자 수(㉑)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0. ㊽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㊽)을 협력업체근로자 수(㉒)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1. ㊾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42. ㊿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㊿ 중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43. ㊿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3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4. ㊿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㊿ 금액에서 ㊿ 금액을 뺀 금액)을 소속근로자 수(㉑)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5. ㊿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㊿)을 협력업체근로자 수(㉒)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6. 복지사업비란(㉗ ~ ㉚)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의 사업 실적을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이용한 근로자 대부(㉗)를 포함합니다.
47. ㉗ 기금 운영비란에는 복지사업 외에 기금 운영과 관련한 지출비용을 적되, 수혜자 수는 적지 않습니다.
48. ㉘ 잔액란에는 남아 있는 목적사업 재원으로, ㉗과 ㉚의 합계액에서 ㉗부터 ㉚까지의 합계액(㉗)과 ㉚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9. 선택적 복지비란(㉗ ~ ㉚)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한 경우 사용한 금액(㉗)과 수혜자 수(㉚)를 ㉗ ~ ㉚에 해당하는 복지사업비 중 그 운영실적(총액과 수혜자 수 합계)을 적습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 실적은 ㉗ ~ ㉚에 해당하는 복지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100명에게 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㉚에는 1천만원, 100명을 적고, ㉗, ㉚에도 1천만원, 100명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50. 부동산 현황(㉛ ~ ㉞)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적습니다. ㉛ 명칭란에는 부동산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적고, ㉜ 금액란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출연받거나 기부받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 당시의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으며, ㉝ 취득일란에는 기금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기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②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② 영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②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u> 4. <u>상법 제360조의25에 따른 소수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u> 5. <u>상법 제360조의3제3항제4호, 상법 제360조의16제1항제4호 및 상법 제523조제4호에 따라</u>

③ (생략) <u><신설></u>	<u>조합원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받는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u> <u>조합의 대표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조에서 “단수주”라 한다)는 찬성하는 경우에는 단수주를 버림으로 계산하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단수주를 올림으로 계산한다.</u>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u>사용된</u>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혜금액”이라 한다)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이하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사용하는</u> ----- ----- ----- -----

이 조에서 “소속근로자”라 한다)	-----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	-----
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	-----
기금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③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
증진에 <u>사용된</u> 금액별로 고용노	----- <u>사용하는</u> -----
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	-----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